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

존경하는 김지향 위원장 직무대리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
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조제3항 중

“의원들” 을 “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”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을 감안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